

# 2019년도 제2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3. 25.(월요일), 16: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8회)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00건(안건번호 제2019-3032~3898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 시(詩) 게시물 3개 안건(제 2019-3034~3036호)은 전체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19-1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전차 회의록 7쪽의 '○○○○'(온라인서비스명) 공개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온라인서비스명은 비공개로 표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C 위원 : 분과위원장 : 같은 생각임
- B 위원 : 이견 없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특정 온라인서비스명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3032~3898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300건임

안건번호 제2019-3032~3036호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신고 민원에 따라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시(詩)를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해당 권리신탁단체 홈페이지의 저작물 목록 검색을 보여주면서)위 단체의 관리 저작물 목록에서 심의안건에서 문제가 되는 시(詩)의 저작명, 작품명은 검색되지 아니함

(민원인이 제출한 '권리신탁 관리신청서'를 제시하면서)출판사명만 기재되어 있고 출판물명, 저작자, 저작물명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한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직원은 보호원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안건번호 제2019-3032호, 3033호의 시(詩) 저작물에 관해서는 출판사로부터 신탁을 받았고, 나머지 3개 시 저작물에 관해서는 신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게시자는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해당 시(詩)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으며 저작자인 시인의 약력을 소개하고 있음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을 보여주면서)게시자는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 약 4,600편의 시, 시조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3032~303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반면 소설, 드라마대본과 마찬가지로 시(詩) 또한 상업적 저작물이고, 온라인상에서 확산이 해당 시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입장도 있음

- B 위원 : 저작자인 시인이 자신의 창작물인 시(詩)가 널리 알려지길 바랄 것이라는 의견과 시(詩)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A 위원 : 시(詩)라는 문학작품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한 시인의 작품을 모아 출판사에서 출판하여 판매하는 '시집'에 실린 시는 다른 상업 저작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등단과 관련하여 여러 시를 모은 '모음집'에 수록된 시가 문제되는 안건의 경우 권리자가 직접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시인의 의사가 확인되지도 않았음

후자의 경우 권리자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시정권고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음악 저작물은 미리듣기 기능이 있어 일부 이용이 가능하지만, 시(詩) 저작물의 경우 시 한 편을 전부 제공하는 전유형 (Appropriation) 이용이 많음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심의안건 게시물의 시(詩)는 시집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한편의 시는 하나의 독립적 저작물임

- C 위원 : 시 저작물의 특성상 시를 알리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음
- A 위원 : 시 저작물은 저작자, 출판사, 신탁관리단체 등 권리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상 규제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가 널리 알려지기를 원할 수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심의안건은 보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시(詩) 게시물이 문제가 된 첫 사례로 심의 기준 정립을 위해 고민해 볼 필요 있음
- A 위원 : 제2019-3032호, 3033호는 이해관계자인 출판사가 신탁단체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므로 가결 의견이고, 권리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3개 안건에 대해서는 시 저작물에 관한 심의 기준 정립을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 출판사를 통해 저작자인 시인에게 연락해 보겠음  
저작자가 시정권고 조치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체위원회에 보고하겠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건번호 제2019-3032, 3033호는 권리신탁단체의 요청에 따라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권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19-3034~3036호는 신탁되지 않은 저작물을 신탁단체가 권한 없이 신고한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고, 추후 시(詩) 저작물에 대한 심의 기준 정립을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3037호는 일반인의 실명 신고에 따라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게시자는 일본 애니메이션 음원파일을 블로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일본은 베른협약, WIPO 저작권 조약, TRIPs 협정 등의 체약당사국이므로 심의 안건의 저작물을 우리나라 저작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내국민 대우)할 의무가 있음
- B 위원 : 이견 없음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건번호 2019-3037호는 네이버 블로그의 일본 애니메이션 음원파일 게시물로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가결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19-3038~3898호는 영화, 음악 등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등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

에 제공한 사안임

- B 위원 : 가수 청하의 '별써 12시' 음원파일이 많은 것 같은데, 언제 나온 곡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네이버 검색 화면을 보여주면서) 해당 곡은 2019년 1월 발매된 곡으로 확인됨
- A 위원 : 별다른 의견 없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2019-3038~3898호는 모두 저작권법 제 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결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3032, 3033호 3037~3898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되, 안전번호 제2019-3034~3036호는 시(詩) 저작물 게시물에 관한 기준 정립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o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2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4. 1.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